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김우영 · 허성무
서미화 · 윤준병 · 노종면
이광희 · 조정식 · 박홍근
박해철 · 민병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, 국가를 수호하며,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음.

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‘헌법존중 정부혁신 TF’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 · 실행 · 정당화 · 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,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, 공무원이 직 · 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현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 · 헌법 준종의 의무 및 반헌

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 및 제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민주주의 수호·헌법 존중의 의무)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4조의2(반헌법행위 등의 금지) 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(이하 “반헌법행위”라 한다)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선전·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무원은 반헌법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6조의2(민주주의 수호 · 헌법</u> <u>존중의 의무) 공무원은 민주주</u> <u>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하여</u>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4조의2(반헌법행위 등의 금</u> <u>지) 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</u> <u>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</u> <u>려가 있는 행위로서 헌법에 위</u> <u>배되는 행위(이하 “반헌법행</u> <u>위”라 한다)에 직접 또는 간접</u> <u>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선전</u> <u>·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공무원은 반헌법행위를 옹</u> <u>호하거나 정당화하여서는 아니</u> <u>된다.</u>